제 2 4 5 회 거 창 군 의 회 임 시 회 제1 차 총무위원회(2020.1.16.)

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



총무위원회

[전문위원 최 주 현]

목 차

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...... 1

의안번호 제2020 - 4호

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 검 토 보 고 서 -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. 12. 30.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19. 12. 31.

2. 개정이유

○ 거창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의 상한을 조례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수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이끌어 거창군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체계 변경 : 제6장 제28조 ⇒ 제5장 제39조
- 나. 규칙에 규정된 투자유치위원회 사항 조례로 통합(안제3조~제10조)
 - 1) 해촉, 제착기파회피, 운영, 간사 및 회의록, 의견청취, 운영세칙 신설
- 다.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및 추가 지원(안 제15조~제16조)
 - 1) 500억원 이상 150명 이상 투자기업 100억원 이내(도비 포함)
 - 2) 추가지원 : 30억원 이내 추가 지원
- 라.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(안 제17조)
 - 1)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투자기업에 50억워 이내 지원(도비포함)

- 마. 소규모기업 지원(안 제18조)
- 1) 지원기준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토록 하여 탄력적 운영바.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(안 제19조)
 - 1) 300억원 이상 30명 이상, 투자금액의 3퍼센트 이내 60억원 이내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1)「지방재정법」제17조제1항제4호, 「지방자치법」제9조
- 2)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

나. 예산 조치 : 2020년도 예산 160,000천원 확보

다. 합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

라. 기타 사항

- 1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9. 12. 4.~12. 24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 : 붙임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조례 개정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포함하고 각 분야별로 조례를 체계화 하고자 현행 조례 제6장 제28조에서 제5장 제39조의 체계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

O 주요내용은

- 안 제3조에서 제10조에서는 규칙에 규정된 투자유치위원회 사항을 조례로 통합하였으며
-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및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과 소규모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19조에서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O 검토의견으로는

- 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을 규정함과 동시에 투자기업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외에 중·소규모 투자기업의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
- 관광산업의 경우도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에 활력을 더하고
- 수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어 거창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● 관련법령 발췌

□「지방재정법」

[시행 2019. 4. 17] [법률 제15803호, 2018. 10. 16, 일부개정]

-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-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 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 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 - 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 -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- 제32조의2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지방보조금(제17조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지방보조사업(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성격, 지방보조사업자(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 -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(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 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1.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
 - 2.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
 - 3.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 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
 - 4.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
 - 5.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
 -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
- 2.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
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- 4.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32조의4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,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보 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2조의5(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.
 -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, 12, 29.>
 -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32조의6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1.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
- 2.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
- 3.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제32조의7(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32조의8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- 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4.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.
 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(同種)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 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

아니한 금액을 상계(相計)할 수 있다.

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 부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2조의9(재산 처분의 제한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(이하 "중요재산" 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,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
 - 2. 양도, 교환 또는 대여
 - 3. 담보의 제공
 -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 - 1.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
 - 2.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(耐用年數)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
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제32조의10(이의신청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, 교부조건, 교부결정의 취소,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,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

□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[시행 2019. 1. 1] [대통령령 제29440호, 2018. 12. 31, 일부개정] 제29조(기부·보조의 제한) ① 삭제 <2011. 9. 6.>

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

- 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.
-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"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- ④ 삭제 <2011. 9. 6.>
-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
- 제109조(적용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 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1.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
 - 2.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
 - 3. 증권으로 된 채권
 - 4.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
 - 5.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
 - 6.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
 - 7.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
 - 8.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
 - 9. 외국의 대사 · 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
- 제111조(납부의 고지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· 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
 -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112조(독촉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 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(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)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,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(이하 "독촉기한"이라 한다)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
- 제115조(채권의 신고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
- 2.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
- 3.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
- 4.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
- 5.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
- 6.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
- 7.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
- 8.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 시된 때
- 제132조(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)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 (이하 "계약담당자"라 한다)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 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133조(채권계약의 약정) ①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.
 - 1.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할 것
 - 2.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
 - 3.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 공,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변경을 할 것
 - 4.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·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
 - 5.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
 -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.
 - 1.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부금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
 - 2.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

□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17. 7. 26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, 타법개정]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

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.~카. (생략)
-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.~차. (생 략)
- 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- 가. 소류지(小溜池)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나. 농산물 · 임산물 · 축산물 ·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
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
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- 사. 공유림 관리
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
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· 지원
 - 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가.~하. (생 략)
 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.~마. (생 략)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.~나. (생략)

[시행일 : 2019.12.25.]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

[시행 2019. 11. 1.] [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-167호, 2019. 11. 1., 일부개정.]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조,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10조(지방 신·증설 투자)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 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(이하 "신설"이라 한다)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 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.
 - 1.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
 - 2. 기존사업장(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상 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
 - ② 국내기업 중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(이하 "증설"이라 한다)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.
 - 1.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
 - 2. 삭제
 - 3.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
 - 4. 삭제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,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·증설 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, 주력산업, 지역집중유 치업종,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, 첨단업종에 해당할 것
 - 2.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(최소 10명) 이상일 것. 다만,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,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,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 - 3. 투자금액이 10억 원(대기업은 300억 원) 이상일 것. 다만,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 - 4.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(폐쇄, 매각, 임대, 축소 금지). 다만, 수도권과밀억 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.
 - ④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 및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⑤ 사업재편기업은 제3항제4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축소(기존사업장의 전부를 폐쇄, 매 각,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)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기 존사업장 축소규모와 제3항제2호의 신규고용규모를 합산하여 충족하여야 한다.
 - 1. 기존사업장의 축소계획
 - 2. 투자사업장의 투자계획
 - 3. 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가 제1호에 따른 기존사업장의 축소규 모보다 크다는 내용

- ⑥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보 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⑦ 제3항제4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행기간 중 생산 효율 제고를 위 해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을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사업 장 상시고용인원의 30퍼센트이내(사업재편기업은 제외)에서 재배치 할 수 있 다. 이 경우 별표6. 별표7. 별표8. 별표9. 별표11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시 감소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만큼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에서 차 감하다.

안건번호	의 견 13-0243	요청기관	충청남도	회신일자	2013. 17.	9.
안건명	보조금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					

• 질의요지

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, 보조금 지 급 결정 시 보조사업자의 일반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, 보조금 지급 결정 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 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?

• 의견

보조금 지급 결정 시 보조사업자의 일반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 저당권을 설정하거나, 보조금 지급 결정 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보조금 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 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어서 적절치 않다 할 것입니다.

으로 보입니다.

•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22조 단서에 따르면,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바, 조례에 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 시 보조사업자의 일반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을 설정하거나, 보조금 지급 결정 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보조금액을 피 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 는 것으로서,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법률 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등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.

먼저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, 우선「지방재정법」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근거하여 사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, 사안의 근저당권 설정은 보조금 환수를 담보하기위한 것일 뿐, 보조금의 지급목적 달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,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같은 법 제17조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을 비롯한「지방재정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과 다른 상위 법령의 규정들을 살펴보아도, 사안과같이 보조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기도 전에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, 사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 할 것입니다.

□ 「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투자기업"이란 도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.
- 2."사업장"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. 다만, 제조업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.
- 3. 외국인투자"란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. 4. "외국인투자기업"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.
- 5."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"이란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 2조제8항에 따른다.
- 6."연구소"란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.
- 7."균형발전대상지역"이란 「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.
- 8. "전략산업"이란「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다.
- 9. "사업개시일"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.
- 가. 제조업의 경우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임
- 나.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「소득세법」제168조에 따라 사업자

등록을 한 날

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

제3조(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) ① 경상남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한다)는 도외 소재 사업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 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시장·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 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
- 2.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-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, 시설보조금,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삭제 <2019.1.3.>
-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·군수와 협의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4조(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)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기업, 도내 신·증설투자기업, 도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) ①도지사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, 공장,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기준,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)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지원대상.지원기준 등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제8조의2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·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제6조의2(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) 도지사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도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, 용수,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해당 시·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7조(임대용지 공급) 도지사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.

제8조(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) ① 도지사는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 상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, 지역 및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.

제9조(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) 제4조·제5조·제6조·제6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수 있다.

1.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

- 2.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
- 3.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

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

제10조(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등) ①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통상과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둔다.

-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시군으로부터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투자유치기관과의 업무협조와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서울세종본부에 투자유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지방세 감면)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「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금융지원)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13조(지원제한)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

제14조(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)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조(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)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을 따른다. 다만,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.

제16조(사업타당성 분석용역)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17조(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)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「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

제18조(기금의 설치) ① 도지사는 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‧운용할 수 있다.

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도 및 시·군의 출연금
- 2.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
- 3. 차입금
- 4. 그 밖의 수입금
- ③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제19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.

- 1. 각종 보조금의 지급
- 2.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
- 3.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
- 4.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

- 5.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,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 **제20조(기금의 관리·운용)** ① 기금은 「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21조(기금운용의 계획 등)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.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22조(기금회계공무원 등)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두되, 기금운용관은 투자통상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.

② 기금의 집행은 「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다.

제5장 투자유치위원회 설치·운영

제23조(위원회의 설치)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투자유치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소관 일자리경제국장이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- 1.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
- 2. 투자유치 관련기관·단체·기업의 전·현직 임원
- 3.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·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
- 4. 그 밖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
-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, 위원의 사임 등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⑥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투자유치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2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

- 1.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
- 2. 제20조에 따른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
- 3.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25조(회의 소집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

② 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6조(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)

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7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는 제척된다.

-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.
-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6장 보조금의 지원 등

제28조(시군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투자기업 지원 신청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융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- ③ 삭제 <2019.1.3.>

제29조(투자기업의 사후관리) ①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0조(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)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,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.

- 1.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·폐업한 경우
- 2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
- 3.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
- 4.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
- 6.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- 7.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
- 8.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
- 9.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제31조(지원받은 기업의 의무)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

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32조(이중지원 금지) ①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. 다만, 제6조의2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금을 제외한다.

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

제7장 보칙

제33조(투자유치자문관) ①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 관(이하 "자문관"이라 한다)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4조(시·군 유치활동 지원) ① 도지사는 시·군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는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5조(투자유치 기여자 보상)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·단체(법인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제3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□ 현행「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공장"이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.
- 2. "공장의 설립"이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1호와 제 2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외국인투자"란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.
- 4. "외국인투자기업"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 을 말한다.
- 5. "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"이란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.
- 6. "기반시설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다.

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

제3조(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) ①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1.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
- 2. 군 소속 공무원

- 3.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, 법조계, 학계, 금융계 등의 인사
-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.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 담당주사가 된다.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
- 2. 국내·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
- 3.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**제5조(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)**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6조(투자유치진흥기금) ① 군수는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설치·운용하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1. 각종 보조금의 지급
 - 2. 임대 산업단지 용지 매입
 - 3.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
 - 4.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
 - 5.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③ 그 밖에 기금 융자대상,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장 국내기업투자에 대한 지원

- 제7조(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) ① 군수는 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 - 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
 - 2.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 -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 보조금,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③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8조(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)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기업, 관내 신·증설투자기업, 관내로의 국내복 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 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도외기업 본점의 관내 이전 지원) 군수는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)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제

7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1조(기업유치 특별지원) 군수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관내기업 중설투자비 지원) 관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증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(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)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 대금의 완납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,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제14조(기반시설 사업지원 등)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·외국인의 투자사업 및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5조(임대용지 공급)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.
- 제16조(채권확보)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행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

- 제17조(지방세 감면)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「거창군세 감면 조례」에 따른다. 제18조(금융지원)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제19조(지원제한)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
- 제20조(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) 군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21조(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)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2조(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)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4장 보조금의 사후관리 등

- 제23조(투자기업의 사후관리)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)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,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

야 한다.

- 1.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·폐업한 경우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
- 3.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
- 4.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- 5.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
- 6.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- 7.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8.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인원을 3 년 이내 유지 못하는 경우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- 제25조(지원받은 기업의 의무)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26조(이중지원 금지)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. 제5장 보칙

제27조(투자유치 기여자 보상)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(개인이나 단체·기관·기업·공무원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.

제2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